



보 도 자 료

책임자 백영화 팀장(법제연구팀, 3775-9048)

작성자 황현아 연구위원(3775-9047)
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2. 8. 5(금) 석간부터
(인터넷 8. 5(금) 오전 10시 이후)

배포 2022. 8. 4(목)

매수 총 4매

보험연구원, 『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: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』 연구보고서 발간

**“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,
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”**

○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(법제연구팀 연구위원)은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빈번히 적용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대한 이론적·실무적 고찰을 담은 『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: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』 보고서를 발표함

- 보고서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, 인정 근거 및 한계, 관련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,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

○ (의의)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,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, 보충적 해석 원칙에 해당함

- (목적: 소비자보호)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인정하고 있음*

* (한국) 약관규제법 제5조; (독일) 민법 제305c조; (영국) 소비자권리법(Consumer Right Act 2015) s69; (프랑스) 소비법(Code de la consommation) L133-2

- (성격: 보충성) 다른 해석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약관을 해석해 보아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, 그 각각의 해석이 모두 합리성이 있는 경우

비로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며, 이를 ‘**보충성**’이라 함

- (적용 현황)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결론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논거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음
 - 대표적인 예로 **재해사망보험금 사건**에서 법원은 ‘자살’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‘재해사망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, 그와 같은 해석의 근거 중 하나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제시하였음(대법원 2015다243347)
 - 특정 수술 대체 시술이 **암보험 및 상해보험 약관상 ‘수술’에 해당하는지 여부**가 문제된 사안에서, 법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수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(대법원 2010다28208; 서울고법 2017나2030581)
- (문제점)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충적 해석 원칙임에도, 일부 사례의 경우 다른 해석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지 않은 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곧바로 적용하고 있음
 -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해석을 통해 명확한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불명확성을 해결하는 것으로,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**최후의 수단일 뿐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**
 -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합리적 적용 범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인정 근거 및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
- (인정 근거)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인정 근거는 ① 책임성, ② 형평성, ③ 투명성, ④ 효용성이라고 볼 수 있음
 - (책임성) 약관은 사업자가 작성하므로, 약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책임 원칙에 부합함
 - (형평성)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약관 내용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계약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음
 - (투명성)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불이익(Penalty)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

- (효용성) 가급적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약관을 해석함으로써 보험의 보장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보험계약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음

○ (한계) 그러나, 위와 같은 인정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짐

- (책임성)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하는 상황에서, 약관의 불명확성(특히 표준약관 조항의 불명확성)에 대한 책임이 보험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움
- (형평성)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무효 조항,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각종 규제 등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음
- (투명성)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, 오히려 약관을 상세하게 정하는 과정에서 가독성 저하, 보장범위 축소,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
- (효용성) 자동차보험, 실손의료보험 등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, 보장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보장범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도 보험의 효용성 제고에 중요한 요소임

<표 1>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인정 근거 및 한계

인정 근거	한계
책임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 작성	보험약관(특히 표준약관)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- 표준약관 작성 주체는 감독당국임 - 기초서류 변경 권고를 통해 개별약관 내용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있음
형평성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	형평성 제고를 위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음 -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음 - 금소법 및 보험업법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
투명성 사업자에게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여 사전에 약관을 투명하게 작성하도록 유도	약관을 상세히 정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-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기능은 크지 않음 - 약관의 내용이 길고 복잡해질 경우, 가독성 저하, 보장범위의 명시적 축소,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(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 논의(별첨 보고서 p. 29) 참고)
효용성 보장대상 및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보험의 효용성 제고	효용성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- 자동차보험,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함

○ (합리적 적용방안)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인정 근거 및 한계를 고려할 때,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일반적인 계약 및 약관 해석 방법으로 불명확성을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

- 특히 약관의 불명확성이 경제·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인 경우,^{*} 또는 보험금 지급이 보험의 선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^{**}에는 더욱 신중한 적용이 요구됨

* 수술 대체 시술을 수술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, 약관 작성 당시에 당해 시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해 시술이 수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약관에서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불가능함

** 자살면책제한조항과 같이 본래 면책 대상인 고의사고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 보장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보험의 선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○ (보험의 단체성에 대한 고려 필요성)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에 앞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해석을 거칠 필요가 있음

- 약관 해석 시 (i) 당해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, (ii) 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, (iii)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균형 및 보험료 인상 유발 여부, (iv)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조장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○ (결론)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, 오남용 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, 보험의 선의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·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

첨부: 연구보고서 『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: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